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훈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724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9.

발 의 자:이훈기·복기왕·이정문

박지원 · 조인철 · 정동영

김정호 · 김용만 · 박수현

주철현 · 김원이 · 노종면

박민규 · 황정아 · 조승래

민병덕 · 김남근 · 문금주

최민희 • 황명선 • 박용갑

의원(21인)

제안이유

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(이하 "문화방송"이라함)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·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 릭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문화진흥회뿐만 아니라 문화방송 사장에 대하여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, 임 원 등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,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, 사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함(안 제6조 등).
- 나.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및 문화방송과 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사장·임원은 임기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,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(안 제8조의2 신설).
- 다. 방송문화진흥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문화방송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(안 제10조의3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본문 중 "9명"을 "13명"으로, "한다"를 "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방송에 관한 전문성"을 "제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방송에 관한 전문성, 지역"으로, "방송통신위원회가"를 "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"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방송통신위원회가"를 "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"로 한다.

- 1.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3명. 이 경우 추천하는 사람 3명은 국회의 의결로 확정한다.
- 2. 활동기간, 주요 활동내역, 회원의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방송·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. 이경우 추천하는 사람 3명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방송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3.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정관으로 정하는 시청자위

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

- 4.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과반을 대표하는 근로 근로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. 다만, 과반을 대표하는 근로 자 단체가 없을 경우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추천하며,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없을 경우에는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소속 전체 근로자가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여 추천한다.
- 5.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. 이 경우 추천하는 사람 2명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,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, 공모·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6조의2(이사의 자격요건) 이사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 - 1. 방송학·언론학·전자공학·통신공학·법률학·경제학·경영학· 행정학 그 밖에 방송·언론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 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
 - 2. 판사·검사·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

있었던 사람

- 3. 방송·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
- 4. 방송·언론 분야의 이용자 보호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
- 제8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7. 「한국교육방송공사법」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, 「방송법」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(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)의 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5년이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8조의2(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) ① 진흥회의 임원 및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사장·임원은 임기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.
 - ② 진흥회의 임원 및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그 계열 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사장·임원은 정치활동에 관

여할 수 없다.

- ③ 진흥회의 임원 및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.
- 1. 진흥회의 임원(이사로 한정한다)이 제6조의2 각 호에 따른 자격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
- 2. 진흥회의 임원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- 3.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이 제10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4. 「방송법」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5.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진흥회 또는 진흥 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- 6.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
- 7.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제9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0조제2호 및 제10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제10호 중 "추천에"를 "임면(任免) 제청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 11호를 제12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11.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

제10조의2의 제목 중 "추천"을 "임면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1항) 각 호 외의부분 중 "추천할"을 "임명제청할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제5호"를 "제3항제5호"로 한다.

- ①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에 대한 임면(任免)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주주총회에서 승인한다. 이 경우 이사회가 사장 을 제청하는 때에는 그 제청기준과 제청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사장을 임명제청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3제1항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장후보자를 정하여 사장의 임기만료 40일 전까지 임명제청을 하여야한다.

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0조의3(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이사회에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사장후 보국민추천위원회(이하 "추천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추천위원회는 성별, 연령,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 이상 20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

도록 하여야 하며, 추천위원회가 객관적·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보 장하여야 한다.

- ④ 이사회는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장의 임기만료 70일 전까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, 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사장후보자 에 대한 임명제청을 의결하는 날까지 존속한다.
- ⑥ 추천위원회는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내·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.
- ⑦ 이사회는 추천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직무수행을 위하여 행정 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- ⑧ 이사회는 추천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사장후보자 공모, 응모자의 주요경력 및 업무수행계획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각 응모자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-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.
- 제10조의4(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.
 - 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 - 2. 진흥회의 임원
 - 3.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

다른 방송사업자의 사장 · 임원

- 4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제10조의5(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등) ① 이사회는 사장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사장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추천 대상 후보자를 선정하고, 이를 추천위원회 구성 다음 날까지 추천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.
 - ③ 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추천 대상 후보자(이하 이 조에서 "추천대상자"라 한다)의 인적사항과 추천대상자가 제출한 자료를 추천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.
 - ④ 추천대상자는 추천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자신의 정책을 발표하고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.
 - ⑤ 추천위원회는 추천대상자에 대한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평가를 반영하여 사장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.
 - ⑥ 추천위원회는 사장의 임기만료 55일 전까지 사장후보자를 3명 이하의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.
 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- 제3조 (임원 및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의 신분보장 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 ·사장이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- 제4조(임원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이후 2개월 이내에 이 법 개정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임명된 이사의 임기는 이 법 개정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.
- 제5조(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방송문화진 흥회 임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임원) ① 진흥회에는 임원	제6조(임원) ①
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<u>9명</u>	<u>13명</u>
의 이사와 감사(監事) 1명을 두	
며,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<u>한</u>	
<u>다</u> . 다만, 보궐임원의 임기는	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
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	<u>다</u>
한다.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④ 이사는 <u>방송에 관한 전문성</u>	④ <u>제6조의2 각 호의</u>
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	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
고려하여 <u>방송통신위원회가</u> 임	중에서 방송에 관한 전문성, 지
명한다.	<u>역</u>
	<u>다음</u> 각 호에 따라
	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
	<u>가</u>
<u><신 설></u>	1.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
	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3
	명. 이 경우 추천하는 사람 3
	명은 국회의 의결로 확정한
	<u>다.</u>
<u><신 설></u>	2. 활동기간, 주요 활동내역, 회
	원의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방송· 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. 이 경우 추천하는 사람 3명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방송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3.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

 사업자의 정관으로 정하는 시

 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

 2명
- 4.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
 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과반을
 대표하는 근로자 단체가 추천
 하는 사람 3명. 다만, 과반을
 대표하는 근로자 단체가 없을
 경우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
 조정법」제29조의2에 따른 교
 섭대표노동조합이 추천하며,
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없을 경
 우에는 진흥회가 최다출자자
 인 방송사업자 소속 전체 근
 로자가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
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여 추
 천한다.
- 5.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는

<신 설>

<u>⑥</u> (생 략)

<신 설>

사람 2명. 이 경우 추천하는 사람 2명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-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 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, 이 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 하여야 하며, 공모·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.
- <u>⑥</u> -----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-----.
- ⑦ (현행 제6항과 같음)
- 제6조의2(이사의 자격요건) 이사 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 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 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 - 1. 방송학·언론학·전자공학· 통신공학·법률학·경제학· 경영학·행정학 그 밖에 방송 ·언론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

제8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~ 6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<u>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</u>
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
2. 판사·검사·변호사 또는 공
인회계사의 직에 10년 이상
있거나 있었던 사람
3. 방송ㆍ언론 관련 단체나 기
관의 임직원의 직에 10년 이
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
4. 방송·언론 분야의 이용자
보호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
한 경력이 있는 사람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
을 합산한 기간이 15년 이상
이 되는 사람
제8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

- 1. ~ 6. (현행과 같음)
- 7. 「한국교육방송공사법」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, 「방송법」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(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

② (생략)<신 설>

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)의 이 사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 기 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날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의2(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) ① 진흥회의 임원 및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 송사업자와 그 계열회사 관계 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사 장·임원은 임기 중 직무수행 과 관련하여 외부의 부당한 지 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.

- ② 진흥회의 임원 및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 송사업자의 사장·임원은 정치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.
- ③ 진흥회의 임원 및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.

- 1. 진흥회의 임원(이사로 한정 한다)이 제6조의2 각 호에 따 른 자격요건을 상실하는 경우
- 2. 진흥회의 임원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경우
- 3.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이 제10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4. 「방송법」 제13조제3항 각

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
 경우
- 5.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인하여 진흥회 또는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- 6.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 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
- 7.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 률에 따른 진흥회가 최다출자 자인 방송사업자의 소관 직무 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

- 제9조(이사회의 구성) ① ~ ③ (생 략)
 -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단서 신설>

⑤ • ⑥ (생 략)

- 제10조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제10조(이사회의 기능) ------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 결하다.
 - 1. ~ 9. (생략)
 - 10.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 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

<신 설>

11. (생 략)

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) <신 설>

취	항	경	우
71 1	5 '	$^{\prime}$ $^{\prime}$	

- 제9조(이사회의 구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 - ----. 다만, 제 10조제2호 및 제10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
 - (5)·(6) (현행과 같음)

으로 의결한다.

- 1. ~ 9. (현행과 같음)
- -----<u>임면(</u>任免) 제청에-----
- 11.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사 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 과 운영에 관한 사항
- 12. (현행 제11호와 같음)
- 제10조의2(진흥회가 최다출자자 제10조의2(진흥회가 최다출자자 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임면) ①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 송사업자의 사장에 대한 임면 (任免)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주 주총회에서 승인한다. 이 경우

<신 설>

①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으로 추천할 수 없다.

- 1. ~ 6. (생 략)
-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 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	이사회가 사장을 제청하는	때					
	에는 그 제청기준과 제청사	유					
	를 제시하여야 한다.						
	② 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	사					
	장을 임명제청하는 경우에	는					
	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사장	후					
	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	사					
	람 중에서 사장후보자를 정	하					
	여 사장의 임기만료 40일 전	까					
	지 임명제청을 하여야 한다.						
	<u>③</u>						
	임명제청 <u>할</u>						
	1. ~ 6. (현행과 같음)						
	<u>④</u> 제3항제5호						
	<u>.</u>						
<u>제</u>	10조의3(사장후보국민추천위	원					
	회의 구성 등) ① 이사회에	<u>진</u>					
	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						
	자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						
	의하여 사자흐ㅂ구미츠처의						

회(이하 "추천위원회"라 한다)

를 둔다.

- ② 추천위원회는 성별, 연령,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 이 상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.
- ③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, 추천 위원회가 객관적·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
- ④ 이사회는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장의 임기만료 70일 전까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야 하며, 추천위원회는 이사회 가 사장후보자에 대한 임명제 청을 의결하는 날까지 존속한 다.
- ⑥ 추천위원회는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내·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.
- ⑦ 이사회는 추천위원회의 원 활한 운영과 직무수행을 위하

<u><신 설></u>

<u>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</u> <u>여야 한다.</u>

⑧ 이사회는 추천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사장후보자 공모, 응모자의 주요경력 및 업무수행계획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각 응모자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
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.

제10조의4(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.

- 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- 2. 진흥회의 임원
- 3.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사장 ·임원
- 4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

 견인

제10조의5(추천위원회의 사장후

<신 설>

보자 추천 등) ① 이사회는 사장 부천을 위한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사장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추천 대상후보자를 선정하고, 이를 추천위원회 구성 다음 날까지 추천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자격 요건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.
- ③ 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추천 대상 후보자(이하이 조에서 "추천대상자"라 한다)의 인적사항과 추천대상자 가제출한 자료를 추천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.
- ④ 추천대상자는 추천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자신의 정책을 발표하고 질문 에 답변하여야 한다.
- ⑤ 추천위원회는 추천대상자에 대한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평 가를 반영하여 사장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.

- ⑥ 추천위원회는 사장의 임기만료 55일 전까지 사장후보자를 3명 이하의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.
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자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.